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주권 등의 매매 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증권거래세법」 및 「증권거래세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2. 10. ~ 2. 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의4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. 7. 1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적용례)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비과세양도명세서

(금융투자업자용)

(앞쪽)

□ 문서번호 : 년 월 일

□ 수 신 : 한국예탁결제원

☐ 발신 : 금융투자업자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□ 제 목 : 비 과 세 양 도 명 세 서

「증권거래법 시행령」 제6조에 따라 주권의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오니
거래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illegible]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

작성 방법

1. ❶ 매매의 ❶~❸란은 연, 월, 일의 두자리씩 적습니다.
2. ❷ 성명란에는 양도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.
3. ❸ 계약번호란에는 양도자의 계약번호를 적습니다.
4. ❹ ~❸란에는 양도주권의 종목명, 주식수, 매매금액을 적습니다.
5. ❹ 비과세구분란에는 비과세 근거를 적습니다.
6. ❶ 양도자 구분란은 양도자 구분에 따라 다음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.

구분	금융투자업자	보험회사	사모집합투자기구	기타집합투자기구	은행
분류코드	1000	2000	3100	3000	4000
구분	기타 금융기관	연금, 기금 및 공제회	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	기타법인	개인
분류코드	5000	6000	7000	7100	8000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